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545 발의연월일: 2023. 1. 18.

발 의 자:김원이ㆍ기동민ㆍ박상혁

서영석 · 송갑석 · 신정훈

어기구 • 조오섭 • 최혜영

홍성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감염병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감염병의 확산 속도와 보건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방역정책을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즉시 조정하는 등 즉각적인 방역대응체계가 매우 중요함.

이를 위해서는 일선의 방역 현장을 담당하는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 료기관과 방역정책을 수립하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간에 신속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나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의료부문의 돌봄 수요 증가, 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, 우울증 및 자살 예방 등 갈수록 지역보 건의료기관의 역할과 상호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음.

이에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여 2개 이상의 지방 자치단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상호 간에 소통과 업무의 효 율성을 증진함으로써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증진 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8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)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상호 간에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의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-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전국 단위협의회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, 시·도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8조의2(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)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상호 간에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의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제1항에 따른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전국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, 시·도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